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실시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31

제안년월일 : '95. 9. 20.

제안자 : 농림수산위원장

1. 주 문

-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부업규모 축산 농가가 사용하는 배합사료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키로 하고 관계법령과 시행규칙 및 공급 요령을 마련중에 있으나,
- WTO 체제와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하여 전업 농가에도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요망

2. 제안 이유

-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부업규모 축산 농가가 사용하는 배합사료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키로 하였으나,
- 부업 축산 농가에만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대상 농가에 대한 사육 두수 확인 등 막대한 행정 수요는 물론 축산 농가의 형평에 맞지 않음.
-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 농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경제의 변화속에서 안심하고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참고 사항

" 없 음 "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실시에 관한 건의안

존경하는 국채
농림 회계
정경수 의원
제원 장관
장관 께

지방 자치의 본격화와 세계화를 맞이하여, 민생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전념하시고,

특히, 축산 농가의 권익 보호와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채
농림 회계
정경수 의원
제원 장관
장관 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축산 농가는 WTO의 출범과 축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사육 규모가 영세한 국내 축산 농가는 외국의 대규모 사육 농가의
경쟁력에 밀려,
축산을 포기해야 할 극한 상황에 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 농가의 대외 경쟁력 회복과 비교 우위가 될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여 축산 농가가 희망을 갖고 뜻을 모아 축산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업규모 축산 농가가 사용하는 배합사료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키로 하고 관계법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및 공급요령을 마련 중에 있으나,

부업 축산 농가에만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대상 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확인 등 막대한 행정수요는 물론 축산농가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면세분 사료 가격과 영세율 적용 사료 가격 등의 차이로 인한 사료 판매 가격의 혼란과 유통 과정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특히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한정적으로 적용한 것에 대하여 축산 농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실시코져 하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실시"는 부업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한하여 부가 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전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농림수산위원회
 농림수산부 장관님

축산의 전업화와 대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만이 WTO 체제와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축산 농가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전업 축산 농가가 사용하는 배합 사료에만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부담시키려 하는 것은 정부의 농어촌발전 시책에도 크게 역행되는 처사라고 여겨지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 농가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경제의 변화속에서도 안심하고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만여 축산 농가의 중지를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건의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9.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